

##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따른 허가증(신고증) 재교부 안내

축산물가공품 관리업무 일원화에 따라 축산물가공처리법(법률 제5443호)이 97.12.13 개정·공포되어 98.6.14부터 시행되고,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812호)이 98.6.20부터 공포·시행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구비한 식육관련업체는 개정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98년 12월 13일까지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 받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 회원에게 공문발송(육가협 제98-301.10.7)

###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 재교부 대상 및 교부 기한

#### 1) 허가증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㉞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회원사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허가증으로 재교부

㉟ 식품보존업의 허가를 받은 회원사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 보관업 허가증으로 재교부

#### 2) 신고증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㉞ 식품운반업의 신고를 한 회원사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 운반업 신고증으로 재교부

㉟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회원사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 신고증으로 재교부

### 3) 재교부처 : 각 시·도

서울 및 직할시는 시청(축산위생과), 각 도는 도청(축산위생과)

### 4) 교부기한 : 98. 12. 13까지

### 5) 수수료 : 없음

### 나. 품목제조 보고

1)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증을 축산물가공업 허가증으로 재교부후 품목제조 보고시에는 별지 제28호 서식을 제품생산 개시후 7일 이내에 각 시·도 축산위생과에 보고해야 함.

\* 참고 1: 별지 제28호 서식(품목제조보고서)

\* 참고2 :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관련조항

<참고 1>

(별지 제28호 서식)

품 목 제 조 보 고 서			
① 보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                      )	
② 영 업 장	명 칭 ( 상 호 )		
	소 재 지		
③ 품 목 의 유 형			④ 영 업 허 가 번 호
⑤ 제 품 명			⑥ 유 통 기 간      제조일부터      년 월 일
⑦ 원료또는 성분배합비율	(별 첨)		
⑧ 용 도 · 용 법			
⑨ 포장방법 및 포장단위			
⑩ 성 상			
⑪ 기 타			
<p>축산물가공처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품목을 제조하였음을 보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서 명 또는 인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보 고 인</p> <p>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 지 사</p>			
<p>※ 구비서류</p> <p>1. 제조방법설명서</p> <p>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한한다)</p> <p>3.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에 한한다)</p>			
<p>※ 유의사항 :</p> <p>품목제조보고서는 제품생산 개시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p>			

##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관련조항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p>第5長 營業의 許可 및 申告 등                      第21條(營業의 種類 및 施設基準) ① 다                      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屠畜業</li> <li>2. 集乳業</li> <li>3. 畜産物加工業</li> <li>4. 畜産物保管業</li> <li>5. 畜産物運搬業</li> <li>6. 畜産物販賣業</li> <li>7. 容器 등 製造業</li> <li>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li> </ol>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세부종                      류와 그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제21조(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 법 제21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                      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축업 :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                          으로 도살·처리하는 영업</li> <li>2. 집유업 :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                          는 저장하는 영업</li> <li>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식육가공업 :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li> <li>나. 유가공업 :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li> <li>다. 알가공업 :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li> </ol> </li> <li>4.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                          게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다만,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                          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                          는 경우를 제외한다.</li> <li>5.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원유를 제외한                          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                          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자의 영업장에                          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처                          리·가공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li> <li>6.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식육판매업 :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                                  매하는 영업. 다만, 냉장 또는 냉동                                  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li> </ol> </li> </ol>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p>第25條(品目製造報告)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畜產物加工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畜產物을 加工하거나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容器等製造業의 申告를 한 者가 容器 등을 製造하는 때에는 그 品目の 製造方法說明書 등 農林部令이 정하는 重要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p> <p>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 및 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p> <p>다. 우유류판매업 : 우유대리점·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p> <p>라. 축산물수입판매업 :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p> <p>7. 용기등제조업 : 착유기(파이프라인 착유시설을 포함한다)·냉각기·유방세척기·집유탱크·원유통·도축검인기 또는 도축검인용 색소를 제조하는 영업</p>	<p>제37조(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고자 하는 축산물가공업 및 용기등 제조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후 7일 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조방법설명서</li> <li>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한한다)</li> <li>3.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에 한한다)</li> </ol>

축산물가공처리법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附 則	부 칙	부 칙
<p>第1條(施行日) 이 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p> <p>第5條(畜産物加工業 등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食品衛生法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製造·加工業의 許可를 받은 者중 이 법에 의한 食肉加工品·乳加工品 또는 알加工品을 製造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이 법에 의한 畜産物加工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며, 食品衛生法 第22條第1項의 規程에 의하여 食品保存業의 許可를 받은 者중 이 법에 의한 畜産物을 보관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이 법에 의한 畜産物保管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月 이내에 市·道知事에게 許可證의 재교부를 申請하여야 하되, 手數料는 免除한다.</p> <p>第6條(畜産物運搬業 등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食品衛生法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運搬業의 申告를 한 者중 이 법에 의한 畜産物을 運搬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이 법에 의한 畜産物運搬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보며, 食品衛生法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肉販賣業·食肉副産物專門販賣業·牛乳類販賣業 또는 食品等輸入販賣業의 申告를 한 者중 이 법에 의한 畜産物을 販賣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이 법에 의한 畜産物販賣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보고, 食品衛生法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容器·포장類 製造業의 申告를 한 者중 이 법에 의한 容器등을 製造하는 者는 이 법에 의한 容器等製造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법 시행후 6月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申告證의 재교부를 申請하여야 하되, 手數料는 免除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